

불복 청구 및 취소 소송

- 1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이 처분이 있은 사실을 알게 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3개월 이내에 야마구치현 국민건강보험 심사회에 대하여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2 처분 취소의 소에 대해서는, 상기 1의 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을 거쳐야만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 이 처분 취소의 소는 이 재결이 있은 사실을 알게 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6 개월 이내에 시모노세키시를 피고로 하여(소송에서 시모노세키시를 대표하는 자는 [시모노세키시장]입니다.) 제기할 수 있습니다. 단,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재결을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 - (1) 심사 청구가 있은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3개월을 경과했는데도 재결이 없을 때.
 - (2) 처분,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현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.
 - (3) 기타 재결을 거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.
- 3 단, 상기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, 이 처분이 있은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심사를 청구하지 못하게 되며, 또한, 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. 덧붙여, 정당한 이유가 있을 시에는 상기 기간 또는 이 처분(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)이 있은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년이 경과된 후에도 심사 청구가 인정되거나 처분 취소의 소 제기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